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0. 12.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제출자)	(제출일)	78 27	
악취방지법		2020. 7. 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	
, , - , , .	바레스		체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511호)	박대수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107호)	정부	2020. 7.2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	
			체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		
시설 설치신고 등) ① ~ ⑤ (생	시설 설치신고 등)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		
	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		
	<u>다.</u>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u>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